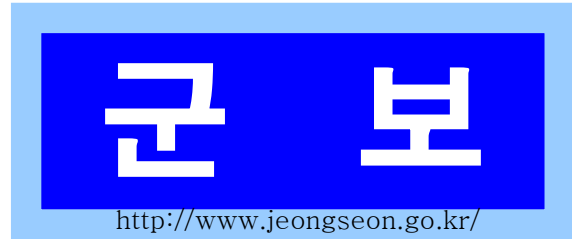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45호 2011. 7. 6.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54호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11-59호 2011년도 개별주택 가격 정정 결정 공시..... 2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383호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정선군공고 제2011-384호 2011년도 재가 진폐자 일자리조성 지원사업 공고..... 9
- 정선군공고 제2011-385호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17
- 정선군공고 제2011-392호 무단방치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0
- 정선군공고 제2011-393호 2011년 예미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공고..... 23
- 정선군공고 제2011-394호 2011 착수 미락지구 받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33
- 정선군공고 제2011-395호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34
- 정선군공고 제2011-397호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6
- 정선군공고 제2011-399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40
- 정선군공고 제2011-400호 2011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추가)..... 43
- 정선군공고 제2011-402호 자동차세(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48
- 정선군공고 제2011-403호 지방세 고지서 납부 공시송달(7월)..... 49

【타 기 관】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 휴대명령 고시 (알림)..... 50

정선군 고시 제2011-54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선군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88회 정선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6. 27.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총 계	302,886,535	278,238,300	24,648,235	8.86%
일반회계	265,912,596	245,527,244	20,385,352	8.30%
기타특별회계	28,326,825	25,156,739	3,170,086	12.60%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1,221,345	302,109	919,236	304.27%
의료급여기금	625,258	592,060	33,198	5.61%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52,334	52,334	0	0.00%
기반시설부담금	86,237	78,289	7,948	10.15%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05,559	326,253	△20,694	△6.34%
주택사업	25,640	20,220	5,420	26.81%
주차장	243,678	207,000	36,678	17.72%
수질개선	25,766,774	23,578,474	2,188,300	9.28%
상수도사업	8,647,114	7,554,317	1,092,797	14.47%

정선군 고시 제2011-59호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공시한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정정 결정·공시합니다.

2011. 6. 30.

정 선 군 수

1. 201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에 따른 정정 결정·공시

가. 공시일 : 2011. 6. 30

나. 대 상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5-1번지의외 45호

다. 내 용 :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정정사유 등

라. 장 소 : 정선군청홈페이지, 게시판

2. 정정 결정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2011. 6. 29 ~ 7. 31.

나. 신청자격 : 주택(건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법률상)

다. 제출장소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2011.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내역

일련 번호	기준년 도	읍면	리	지번	동호	당초결정가격	정정가격	정정사유	비고
1	2011.1.1	사북읍	사북리	345-1	1	54,500,000	36,800,000	비교표준주택변경#200->#205	이의신청 정정
2	2011.1.1	임계면	봉산리	152	1	12,900,000	22,000,000	건물구조변경목조→벽돌조, 주거면적변경33.2㎡→80.39㎡	이의신청 정정
3	2011.1.1	남면	무릉리	827-11	1	182,000,000	66,000,000	대지산정면적변경 1,735㎡→172.7㎡	이의신청 정정
4	2011.1.1	정선읍	용탄리	410-3	1	14,300,000	11,600,000	사용승인일 변경 1998년→1995년	이의신청 정정
5	2011.1.1	정선읍	애산리	385-8	2	13,200,000	3,020,000	건물구조변경철근→목조, 사용승인일 2010년→1970년	이의신청 정정
6	2011.1.1	정선읍	봉양리	340-36	2	66,200,000	55,200,000	건물구조변경벽돌조→경철, 연와조	이의신청 정정
7	2011.1.1	신동읍	운치리	186	2	91,300,000	26,000,000	대지면적변경 307㎡→74㎡	직권정정 (과년도)
8	2011.1.1	신동읍	운치리	186	2	91,300,000	26,200,000	대지면적변경 307㎡→74㎡	직권정정
9	2011.1.1	신동읍	덕천리	93	3	23,800,000	19,500,000	대지면적변경 40.94㎡→32.94㎡	"
10	2011.1.1	신동읍	덕천리	93	4	23,800,000	19,500,000	대지면적변경 40.94㎡→32.94㎡	"
11	2011.1.1	정선읍	용탄리	767	1	44,400,000	38,800,000	주거부속 36.0㎡를삭제, 대지면적변경 278→490㎡	"
12	2011.1.1	정선읍	봉양리	297-2	1	58,4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13	2011.1.1	정선읍	애산리	47-1	1	2,43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14	2011.1.1	정선읍	애산리	416-12	1	1,5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15	2011.1.1	정선읍	용탄리	1382	1	5,95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16	2011.1.1	정선읍	가수리	548	1	13,6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17	2011.1.1	고한읍	고한리	353-3	1	18,8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18	2011.1.1	고한읍	고한리	94-18	1	30,9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19	2011.1.1	고한읍	고한리	산 1-17(11동)	11	529,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20	2011.1.1	고한읍	고한리	334-25	1	7,29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21	2011.1.1	사북읍	사북리	344-169	1	101,0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22	2011.1.1	사북읍	사북리	344-166	1	84,9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23	2011.1.1	신동읍	조동리	327-1	1	2,49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24	2011.1.1	신동읍	조동리	213-13	1	3,16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25	2011.1.1	신동읍	조동리	289-10	4	3,34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26	2011.1.1	화암면	화암리	144	1	4,4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27	2011.1.1	화암면	호촌리	527-3(2동)	2	2,59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28	2011.1.1	남면	문곡리	317-20(1동)	1	9,21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29	2011.1.1	남면	문곡리	317-20(2동)	2	17,2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30	2011.1.1	남면	무릉리	362(1동)	1	1,97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31	2011.1.1	남면	무릉리	362(2동)	2	2,53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32	2011.1.1	남면	유평리	247(1동)	1	2,47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33	2011.1.1	남면	유평리	247(3동)	3	2,0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34	2011.1.1	남면	무릉리	326	2	35,4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35	2011.1.1	남면	무릉리	788-19(1동)	1	2,17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36	2011.1.1	남면	무릉리	788-19(2동)	2	583,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37	2011.1.1	여량면	구절리	산1	1	839,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38	2011.1.1	여량면	유천리	292-2	1	14,2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39	2011.1.1	북평면	북평리	661-5(2)	2	2,46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40	2011.1.1	북평면	북평리	144-4(1동)	1	5,1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41	2011.1.1	북평면	남평리	903-12	1	13,20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42	2011.1.1	임계면	용산리	417	1	6,09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43	2011.1.1	임계면	물래리	616-10	1	2,74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44	2011.1.1	임계면	직원리	77(1동)	1	3,81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45	2011.1.1	임계면	직원리	77(2동)	2	3,230,000	0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46	2011.1.1	임계면	봉산리	140(2동)	2	3,170,000	-	건물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

정선군 공고 제2011-383호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06. 24.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가.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2010년 4월)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을 위하여 청사 신축시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 의무화 하는 등 신축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 나.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2010. 8. 5)으로 신축청사기준 면적 준수에 따라 우리군의 여건상 건립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청사 건립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바, 현 청사를 적정한 기능보강(리모델링)을 통하여 군민과 공무원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 외부환경과 조화되게 변화를 주고자 기 적립된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정선군 청사건립 기금 및 운용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용도 (안 제4조)
- 기금의 용도중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타 군수가 청사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외에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
- 나. 기금의 전출 (안 제5조의2)
- 제4조의 기금용도로 사용하자 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도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07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302)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청사 건립”을 “군청사 건립 및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청사건립”을 “청사건립 및 현 청사 기능보강(리모델링)”으로 한다.

3.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전출)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생략)

②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 2.~3. (생략)

[별표 1]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생략)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 분		기 준 면 적 (㎡)
시	인구 10만 미만	11,893㎡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	13,965㎡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17,759㎡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18,907㎡
군	인구 3만 미만	7,525㎡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8,38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9,406㎡
	인구 10만 이상	11,829㎡

※ 비고: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1-384호

2011년도 재가 진폐자 일자리조성 지원사업 공고

2011년도 재가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24.

정 선 군 수

1. 사업 목적

- 과거 탄광에서 일하던 근로자중 일부는 진폐증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사업 기본 방향

- 재가 진폐자를 고용하는 법인 및 진폐자 단체의 근로성 일자리 조성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
- 정부(산하 공공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가 진폐자 지원사업과 중복 배제

3. 사업 예산 : 400백만원 (고용보조금 200백만원, 사업개발지원 200백만원)

4. 사업 기간 : 2011. 7월 ~ 2011. 12월

5. 응모자격

5-1 강원도내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재한 시·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재가 진폐자를 1명이상 상시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5-2 강원도내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재한 시·군의 진폐재해자 단체 및 진폐재해자로 구성된 공동체

6. 지원대상 사업내역

사업내용	지원금액	지원조건	응모자격	비 고
재가 진폐자 고용보조금	신청인원 1인당 70만원 이내, 6개월 이내 지원 (예산액: 200백만원)	· 지원업종 : 제조업 · 신청인원 : 2011년 하반기중 재가진폐 재해자를 고용하는 인원수 · 지원한도 : 회계년도내 1개 기업당 10명 이내 · 고용 증빙자료를 기초로 3개월 단위 또는 일시에 지원금 사후지급 · 고용주는 1년이상 고용유지의무 및 신청인원 고용보험 가입 · 고용유지의무 위반시 잔여 지원금 중단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5-1	· 사업신청자 미달 또는 사업내용별 집행잔액 발생 예정시에는 총예산 한도내에서 사업내용별 예산액을 상호 증감 조정 가능
사업개발 지원 (사업부지· 건물 임차료 및 시설비)	사업장당 50백만원 이내 (예산액: 200백만원)	· 지원업종 : 식품가공업, 영농업, 서비스업 · 부지·토지 임차료 및 시설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합산하여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자료를 기초로 지원금 사후지급 ※시설비 : 기계류 구입비, 영농시설비, 사업에 필요한 자재비	5-2	

7. 제출서류

사업내용	신청서류	지원대상 선정후 제출서류	비 고
재가 진폐자 고용보조금	· 신청서 (서식 1) · 고용계획서 (서식 2)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유지의무 이행각서(서식 3) · 신청업체 현황	· 고용내역서 · 진폐등급서류 · 근로계약서사본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사업개발 지원 (사업부지· 건물 임차료 및 시설비)	· 신청서 (서식 4) · 사업계획서 (서식 5) · 신청업체 또는 단체 현황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차료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송금내역 등) · 공사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 시설비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8.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심사기준

- (1) 기금의 사용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 (2) 금액산정의 적정성 및 자부담에 대한 능력

(3)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등

- 선정결과 : 개별통보

9. 사업 추진 체계

도 <관광지역개발과>	시·군 <사업주관부서>	법인 및 단체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 심사 및 선정 ▪ 시·군 사업예산 내시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등	▪ 지원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진달 ▪ 지원선정사업 보조금 지급 ▪ 사업수행 지원 및 사후 관리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 사업계획 신청 ▪ 지원선정된 사업 시행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10. 신청 안내

- 신청서 제출기한 : 2011. 7. 29(금)
-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 신청서류 제출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 주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우 233-701)
 - 담당자 : 이정원 (TEL : 560-2350, FAX : 560-2594)

11. 기타사항

- 사업비 집행방법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름
-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되며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사업내용 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법인 및 단체는 향후 지원이 불가합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서식)

서식 1

신 청 서

사 업 내 용		재가 진폐자 고용보조금			
고 용 인 원		예시) ○명 (2011년 3분기: ○명, 4분기 ○명)			
근 로 분 야		예시) 생산직, 사무직, 환경미화 등			
사 업 장 소		예시) ○○시 ○○읍 ○○리 ○○번지			
지 원 요 구 액				산출기초	○명×50만원×6개월
신 청 업 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FAX	
	법인번호		업 종		
	설 립 일		종업원	명	

위와 같이 재가 진폐자 일자리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 . .

신청단체명 : (직인)

제출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 구비서류

1. 고용계획서 1부
2. 신청업체 현황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비영리법인허가증사본) 1부.
4. 고용유지의무 이행각서 1부.

정선군수 귀하

서식 2

고 용 계 획 서

1. 기업체 연혁**2. 신규직원 고용계획**

고용 예정월	고용인원수	근무부서 및 채용 내역
○○년 ○월		
○월		
계	명	

※ 고용조건 :

3.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액

○ 지원신청액 :

- 산출기초 : 고용예정인원 ○명 × 50만원 × 6개월

4. 기대효과

서식 3

고용유지의무 이행각서

○ 주식회사는 재가 진폐자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겠으며, 고용보조금 지원조건에 따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고용의무

- 고용유지대상 : 2011년 하반기중 고용한 재가 진폐재해자
- 고용유지기간 : 고용일로부터 1년 이상
- 고용유지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법인인감)

대표자 : (서명)

※법인인감증명 : 별첨

정 선 군 수 귀 하

서식 4

신 청 서

사 업 내 용		사업개발 지원 (사업부지·건물 임차료, 시설비 중 택)					
사 업 명		예시) 특용작물 재배 및 판매, 두부제조 판매 등					
사 업 기 간		예시) 2011. 7. 1 ~ 2011. 12. 31					
사 업 장 소		예시) ○○시 ○○읍 ○○리 ○○번지					
소 요 예 산		총사업비 ①+②		지원요구액 ③		자체예산 ④	
신 청 단 체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FAX
	설립목적						
단체현황		창립연도 : 년		총인원 : 명(직원수 명, 회원수 명)			

위와 같이 재가 진폐자 일자리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 . .

신청단체명 : (직인)

제출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단체 현황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비영리법인허가증사본) 1부.

정선군수 귀하

서식 5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 사업목적

작성예시) 사업목적을 간략히 기재

☐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작성예시) 총사업비○○백만원 / 지원신청액○○백만원 / 자부담액○○백만원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작성예시) 사업명, 사업량 또는 사업규모, 작업방법, 참여인원수, 생산물의 처리방법

2. 사업 수익금 처리방법

작성예시) 사업수익금 발생시 어떻게 처리할 건지(배분 또는 재투자 등)

3.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사항

작성예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강원랜드 등 지역 공공기관 으로부터 협력 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

4. 추진일정

※ 사업관련 세부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5. 기대효과

정선군 공고 제2011-385호

우리군에서 실시한 신동읍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폐쇄 및 지적확정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11. 6. 24.

정 선 군 수

- 사 업 명 :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
- 공고기간 : 2011.06.24~2011.07.08(15일)
- 공고내용 :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 토지대장 : 41필지 107,260.8m²
 - 지적공부 시행일 : 2011.06.23.

현 행정구역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읍.면	리.동				성명	등록번호	
신동읍	예미리	809-13	장	2,016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09-17	도	69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36	전	909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36-4	도	280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38	전	1,035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39	전	1,907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0-1	전	1,210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0-2	전	1,337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1	전	235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2	전	208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3	전	389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4-1	전	2,595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4-2	전	2,595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5	전	869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5-1	장	147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6	답	1,075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6-1	답	813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7	답	327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8	대	509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49	답	1,762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0	답	1,759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1	답	886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2-1	답	3,572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2-2	답	469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2-3	답	1,206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2-8	답	397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2-9	도	57	국(건설교부)	232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3	전	330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4	답	2,135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5	답	766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6-3	답	3,521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6-5	도	161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7	답	1,175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59-2	답	893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63-1	답	666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64	답	1,164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65	전	1,921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66-1	답	1,257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66-9	답	88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68-1	답	1,190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69-2	답	736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69-4	도	228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69-6	답	688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69-8	도	93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69-10	도	4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69-11	도	13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0	답	671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1	답	3,972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1-1	장	990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1-2	답	2,464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2	답	6,212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3	답	939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3-1	장	2,215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4	답	2,489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5	답	704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6	답	982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7	답	1,289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8	답	787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79	답	1,557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0-1	답	2,208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0-7	답	132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0-8	도	156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1-1	답	112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2	답	2,350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3	답	450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4	답	397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5	답	20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6	답	783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7	답	420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8	답	2,629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9-1	답	718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89-7	도	52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예미리	892-75	장	899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187-3	답	1,403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194-10	잡	848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195	전	152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196-1	대	271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196-2	창	1,152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196-3	전	4,597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197	전	492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197-1	구	372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198	전	5,117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202	전	268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205-4	답	2,060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206-2	답	26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210-8	전	48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211-8	전	1,311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212-1	전	1,525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212-8	전	154	정선군	3237	전필
신동읍	천포리	498-5	잡	5,662	정선군	3237	전필

107,717

예미리 73 82,259

천포리 17 25,458

계 90 107,717

정선군 공고 제2011-392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공고

우리군 관내 타인소유 토지 및 도로변, 주택가, 공영주차장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1. 06. 28 ~ 2011. 07. 12(15일간)
2. 공고대상 : “불입내역 참조”
3.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 및 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자진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기한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검찰로 송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강원도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교통행정계 (033-560-2512)

※ 강제처리시 차량내에 있는 모든 집기 및 물품도 함께 처리됩니다.

2011. 06. 27.

정 선 군 수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접수번호	차량번호	소유자명	방치장소	보관장소	반송사유
2011021 402	서울30더 2856	주-하이폴	233-90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주소불명
2011020 903	02머9262	(주)핵사 곤	233-812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12리		수취인불명
2011020 902	31다6254	박명규	233-815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10리	종합자원 폐차장	수취인불명
2010122 402	04구1042	홍석윤	233-90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4리		폐문부재
2010122 401	경기32누 4653	김현대	233-90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4리	종합자원 폐차장	폐문부재
2010122 101	경기84다 1025	홍충기	233-811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종합자원 폐차장	수취인불명
2010121 704	서울54모 4678	김연숙	233-906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2리		이사감
2010121 703	07무7203	이대화	233-906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2리		이사감
2010121 702	43너5201	이운우	233-90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4리		수취인불명
2010121 701	05가1537	최봉용	233-90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폐문부재
2010120 901	41더2084	박성배	233-90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폐문부재
2010120 101	서울36나 2585	박광민	233-833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종합자원 폐차장	폐문부재
2010112 401	강원81다 3987	서상석	233-811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수취인미거 주
2010112 302	09부2800	김병길(성 호모터스* 상품용)	233-811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수취인불명
2010112 201	55구4262	홍상명	233-811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수취인불명
2010111 702	경기88누 1383	이옥례	233-90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폐문부재
2010111 502	서울70가 4507	(주)콜라 주엔터테 인먼트	233-833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사감
2010072 202	55로2102	(주)청로 모터스*상 품용*	233-811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고한 2공영주차장내	종합자원 폐차장	이사감
2010071 201	서울70모 5443	구일일안 천시스템- 주	233-816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5리 종합자원폐차장내		수취인불명
2010070 709	34부9062	이순님, 윤석봉	233-90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주공아파트 2동		이사감

2010070 709	34부9062	이순님, 윤석봉	233-90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주공아파트 2동		이사감
2010070 708	제주93가 2104	이경범	233-90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주공아파트 2동		폐문부재
2010070 707	66가8387	문소연	233-90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주공아파트 1동	종합자원 폐차장	주소불명
2010070 705	경기45라 8715	강희순	233-90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도사곡주 공아파트 2동	종합자원 폐차장	수취인불명
2010070 703	서울48도 9715	이동석	233-90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 도사곡 주공아파트 202동	종합자원 폐차장	이사감
2010070 702	경기65가 9115	염경애	233-90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주공아파트 202동	종합자원 폐차장	수취인불명
2010041 601	경북71고 1500	박계옥	233-812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12리 지장2교 주변공터	종합자원 폐차장	수취인부재
2010020 301	04주3223	김도연	233-90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강원랜드 스페이드주차장		폐문부재
2010012 601	강원27머 6489	이 창근	233-835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이사감

정선군 공고 제2011-393호

예미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공고

우리 군에서 조성중인 『예미농공단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2011. 07. 01.

정 선 군 수

1. 농공단지 개요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원
- 조성면적 : 107,261㎡
- 준 공 일 : 2010. 10. 21
- 건축가능시기 : 농공단지 분양즉시
-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2. 분양대상

- 공장용지 : 75,634㎡(14개 블록)
- 최소 분양면적 : 1,650㎡

3. 공고기간 : 2011. 07. 01 ~ 2011. 07. 15

4.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1. 07. 18 ~ 2011. 08. 17(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기업지원팀 (☎033-560-2356, 2352)
- 제출서류 : 분양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업체 소개서 1부

5. 유치업종

- 음식료품 : 식료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 목재종이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제조업(17)
- 기 계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지역특화업 : 식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기타 제품제조업(33)

○ 기타제조업 : 기타 제품제조업(33)

[입주제한 업종]

- ①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 ②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 ③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 사업장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악취,소음,진동,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제조업이나,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입주금지 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주를 제한

6.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
-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

7. 입주우선순위

- ① 정선군 이전을 위하여 협약(MOU 등)을 체결한 업체
- ② 수도권 및 타 시도 지역에서 본사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이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전문 가공공장을 이전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업체
- ③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체
- ④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공해가 적은업체
 ※ 위 사항에 불구하고 정선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함

8. 분양가격 : 68,367원/㎡(3.3058㎡당226,008원)예상

- 농공단지조성공사 준공 및 사업비 정산 후 분양가격 증감 조정

9. 분양조건

-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납부조건

구 분	계 약 금	잔 금	비 고
납부시기	입주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금액	10%	90%	

○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 100% 완납 시

10. 기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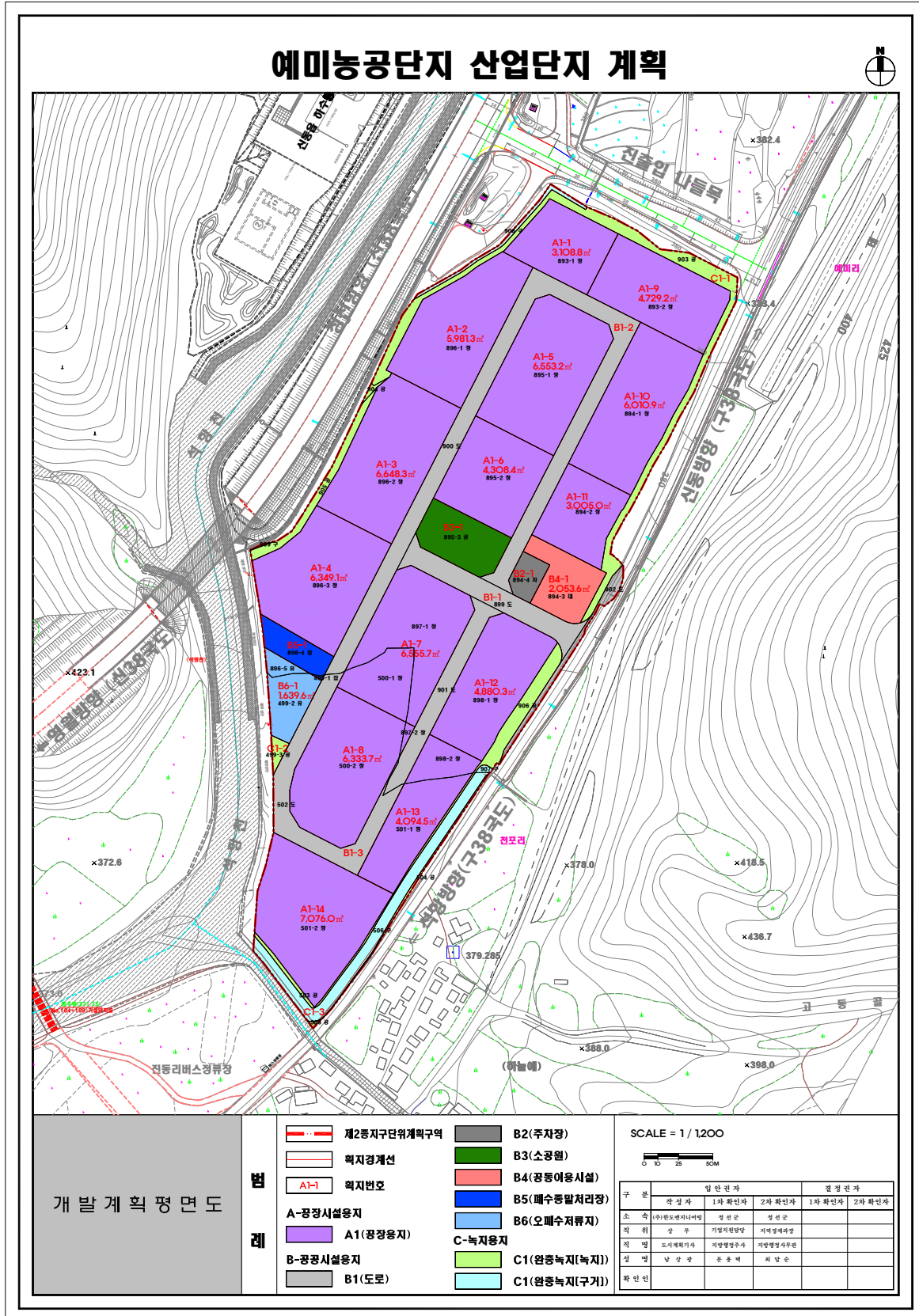
- 공고문(군보, 홈페이지 게시문), 유의사항 내용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의 협의내용,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포함)와 건축·주차장 등에 관한 관련법규, 정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 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우리 군 조례 등의 제정·개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 신청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연약지반,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토지 사용시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인 대표자의 가족, 임원, 주주명의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주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함
- 각종 열람도서는 정선군 지역경제과에 비치되어 있고, 열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별첨“)
- 분양신청문의 : 정선군청 기업지원팀(전화 033.-560-2356, 2352)

※ 제출서류

분양계약시	○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 가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 : 지정계좌에 입금후 입금증 사본 제출 농협224-01-017101 예금주: 정선군청
입주신청시	○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주계약시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 가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입주신청 후에는 신청사항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용도별구획 평면도



분 양 신 청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휴대폰)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은 소재지)			
	공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위 치	예미농공단지	블럭번호	필지번호
	신 청 면 적	㎡		
	업 종		분 류 번 호	
	생 산 제 품			
확 약 사 항		입주선정후 정선군이 지정하는 기간내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용지 분양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대기, 수질) 종별(1~5종) 확인서류 2. 공장등록 증명원(분양공고일 이전 등록업체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2011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회사개요

기 업 체 명	
대 표 이 사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 도	
사업장의 주소	
사 업 목 적	
주 요 사 업	
종 업 원 수	
자 본 금	
결 산 일	
홈 페 이 지	

☐ 자산현황

구분	세부내역	면적	평가금액	내 역
공 장	토지			
	건물			
물 류 및 연구소	토지			
	건물			
기 계				
기 타				

☐ 회사연혁

- 회사연혁
- 특허, 인가, 허가, 상표출원 등

☐ 회사소개

- 대표임원
- 경영시스템, 실적, 기타

☐ 주요거래처

-
-

☐ 지적재산권

- 특허권

번호	출 원 명	출원 및 등록일	출원 및 등록번호	비고

○ 상표권

번호	출 원 명	출원 및 등록일	출원 및 등록번호	비고

○ 기타 논문 등

번호	논 문 명	발 표 일	발 표 지	비고

□ 연구소 현황

-
-
-

□ 사업추진 배경

-
-
-

□ 사업추진 목적

-
-

□ 사업추진 범위

- 필요 설비
- 시설 규모
- 고용 인원
- 입지 지역

□ 투자계획

☐ 자금조달 및 운용방안

- 자금조달
- 자금운용방안

☐ 중장기 경영계획

- 회사경영 전략
- 마케팅전략
- 매출계획

☐ 제품소개

-
-

☐ 사업효과

- 고용효과
- 소득효과
- 경제효과
- 해당지역 환경오염도 해소 방안
- 다른 업종과의 연계성
- 기 타

☐ 건의사항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2. 공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부.
3. 재무제표 1부.
4. 직전분기 부가세확인 증명원(세무서) 1부.
5. 대표이사 경력사항 1부.

정선군 공고 제2011-394호

공 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1 착수 받기반정비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06. 28.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2011 착수 미락지구 받기반정비사업
2. 사업목적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대단위 받경작지를 대상으로 농도, 배수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물량 및 사업비

지 구 명	위 치	수혜면적 (ha)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1지구	52.0	1,506,000	
미락지구	임계면 낙천2리 미락 일원	52.0	1,506,000	

4. 사업예정기간 : 2011년 08월 ~ 2012년 12월 30일
5. 사업효과
 - 영농기반구축으로 영농편의제공 및 농업생산성 향상도모
6.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정선군 농업축산과 농촌개발팀 (TEL : 033-560-2373, 2444)
9.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1-395호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원주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평창~정선간(3공구)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정선군청 건설방재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용물건 및 소유자(또는 관계인) : 붙임

- 가.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나. 사 업 명 : 평창~정선간 도로건설공사(3공구)
- 다. 공고 및 열람기간 : 2011. 06. 30 ~ 07. 14(15일간)
- 라.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정선군 건설방재과

2. 공고내용

- 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평창~정선간 도로건설공사(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 나. 수용재결신청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본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업시행자(원주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 033-749-8246, 정선군 건설방재과 도로관리팀 033-560-2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용신청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1부. 끝.

2011. 06. 29.

정 선 군 수

의 견 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1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정 선 군 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1-397호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7. 4.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인터넷 자치법규 및 법령정보서비스가 제공됨으로 인하여 종이자치법규집 및 법령집의 이용률이 감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 관리 방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법규집을 전자매체로 제작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인터넷 자치법규정보 서비스 제공 규정 신설
-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의 의무발간규정 삭제

4.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및 문의사항

- 제 출 처
 - 주 소 : (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 받 는 이 : 정선군 기획감사실 감사법무계
 - FAX : 033) 560- 2592
- 문의사항 : 033) 560-2400 박남경

6. 참고사항

-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을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중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장제7절(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자치법규집 등의 발간 및 관리

제34조(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의 발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간 당시 효력이 있는 정선군 조례·규칙·훈령·예규를 수록한 정선군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이하 “자치법규집 등”이라 한다)을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매체(CD 등)로의 제작도 가능하다.

제35조(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정보의 제공) ①군수는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정보(이하 “자치법규정보”라 한다)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치법규집 등에 수록할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자치법규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분류·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자치법규정보의 관리) 기획감사실장은 제35조에 따른 자치법규정보를 자치법규집 등과 연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제8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의2(법령정보의 제공) ①법제처장은 제2조에 따라 법령집에 수록할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법령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분류·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를 법령집과 연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0]

정선군 공고 제2011-399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산383번지, 화암면 북동리 산170-1번지 일원에 산불감시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1. 6. 30.

정 선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신기술 도입 및 영상정보 공동 활용으로 산불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 6. 30부터 ~ 2011. 7. 19까지(20일간)

5. 행정예고방법 : 정선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게시판 게시

6. CCTV 설치예정 장소 : 2개소

설 치 장 소	CCTV설치 대수(대)	설치예정	비 고 (운영시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산383번지	1	7~8월	일출후~ 일몰전까지
정선군 화암면 북동리 산170-1번지	1		

-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1. 7. 19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산림정책과
 - 전 화 : 033) 560-2424, Fax : 033) 560-2019
-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별지 서식]

주 민 의 건 제 출 서

사 업 명	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11-400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7. 04.

정 선 군 수

소하천명	사 업 개 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 업 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의림천	2011소하천 (의림천)정비	예미리 315-5	예미리 697-9		775		'11.0 7	'11.1 2	수해피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방지하고 농작물 생산을 위하여	손실보상
			- 이	하	여	백 -				

※ 열람서류

1. 토지조서 1부.
2. 실시설계도서(건설방재과 비치)
3. 위치도(건설방재과 비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2.5.31>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정선군

(2011년)

수계명	소하천 번호	소하천 명	소하천 연장 (m)	유역 면적 (km ²)	계획 하폭 (m)	정 비 계 획																	
						전 체			기 정 비			금 회 시 행									장 래 계 획		
						사업량(m)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m)		사업비 (백만원)	위치		사업량(m)		사업비(백만원)		사 업 효 과			사업량(m)		사업비 (백만원)
						축 제	호안		축제	호안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국비	지방비	농경지 (ha)	건물 (동)	수질 (ppm)	축제	호안	
계		1개소	6,500	21.45			4,590	3,901		3,710	374				775	783	783	1.1	13			530	1,961
석항천	11-12-063	의림천	6,500	21.45	30		4,590	3,901		3,710	374	예미리 315-5	예미리 697-9		775	783	783	1.1	13			530	1,961

구비서류

-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소하천정비공사의 명칭
 -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 소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소하천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연월일
 -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1)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발생예상 폐천부지의 면적
- 소하천정비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예정공정표
-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용 지 조 서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예상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892	천	108,075	38	국(건설교통부)				
2	892-9	도	985	69	정선군				
3	279	천	466	370	국(건설교통부)				
4	278	천	344	305	국(건설교통부)				
5	892-71	대	889	113	강원도				
6	892-72	대	426	231	정선군				
7	275-2	답	2,618	353	고옥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315-18			
8	892-21	대	184	3	우상기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2-20			
9	892-20	대	254	12	장사용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306-1			
10	892-19	도	30	1	정선군				
11	892-18	전	392	15	오영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53-2 씨제이나인파크102-802			
12	892-17	대	362	28	오영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53-2 씨제이나인파크102-802			
13	892-16	대	268	49	정선군				
14	892-15	대	346	58	장성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306-1			
15	892-14	대	109	37	김양식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91			
16	892-90	도	165	6	국(건설교통부)				
17	892-82	천	466	3	국(건설교통부)				
18	351-14	도	347	7	국(건설교통부)				
19	315-5	전	138	138	최종옥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310			

20	262-1	대	339	12	안길준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317-2			
21	262-12	대	21	21	정선군				
22	산188	임	103,5 37	325	라선인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198-1로얄아파트 6동303호			
23	276-3	전	2,618	177	황병운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16-6			
24	277	천	195	186	국(건설교 통부)				
25	276-4	전	1,517	1,352	황병운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16-6			
26	276-1	천	922	543	국(건설교 통부)				
27	892-11	천	5,340	4,949	국(건설교 통부)				
28	268-2	전	1,987	208	최대현	원주시 태장동 734-8			
29	268-3	대	317	115	최대현	원주시 태장동 734-8			
30	268-1	전	16,01 3	1,833	최대현	원주시 태장동 734-8			
31	272-2	전	2,076	1,265	최종욱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310			
32	90-1	구	2,908	28	국(건설교 통부)				
33	272-3	수	1,044	29	정선군				
34	315-4	수	440	17	정선군				
35	262-11	전	854	549	정선군				
36	892-63	도	115	23	국(건설교 통부)				
37	658-15	도	4,121	94	국(건설교 통부)				
38	665-5	전	149	149	황윤하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82			
39	665-17	도	799	103	국(건설교 통부)				
40	665-6	도	783	548	국(건설교 통부)				
41	666-1	도	863	321	국(건설교 통부)				
42	665-10	답	660	12	황효식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72-11			
43	892-7	전	1,014	875	정선군				

44	695-9	도	5,235	186	국(건설교통부)			
45	692-26	전	1,210	26	정선군			
46	892	천	76,552	2,187	국(건설교통부)			
47	697-9	도	136	103	국(국토해양부)			
48	697-3	천	1,362	280	정선군			
49	697-5	천	1,100	290	정선군			
50	697-13	천	1,064	1,064	정선군			
51	697-1	전	211	65	국(기획재정부)			
52	697-8	도	396	101	국(국토해양부)			
53	892-80	천	386	261	국(국토해양부)			
합 계				20,133				

정선군 공고 제2011-402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이 상 호 외 281인(“별첨”)

주소또는거소 : “별첨”(홈페이지참조)

서류의 명칭 : 2011년도 6월중 정기분(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11년도 6월중 정기분(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위의 서류를 2011년 06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일인 2011년 0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7. 01.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고 제2011-403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장진희 외 7건(“별첨”)

주소또는거소 : “별첨”(홈페이지 참조)

서류의 명칭 : 2011년도 지방세 납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11년도 지방세 납세고지서(2011년 6월)

위의 서류를 2011년 6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일인 2011년 0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7. 04.

정 선 군 수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1. 6. 2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명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농장에서 사육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염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예방접종 실시 및 기록) ①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접종시기 및 접종량은 다음과 같다.

축 종	예 방 접 종 시 기	접종량(1회)
소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ml/두
	②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돼 지	①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2ml/두
	② 웅돈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2개월령 1차만 접종	
	④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염 소	①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2차접종 5~6개월후 보강	1ml/두
	② 1세이상 - 1년 간격으로 접종	

②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 등은 소의 경우 시·군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통보하여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돼지·염소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직접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및 휴대) ①소유자 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이하 “구매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확인서를 인계받은 가축시장의 운영자는 매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구매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또는 이를 인계받은 구매자 등은 예방접종 확인서를 소·염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간, 돼지의 경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자돈, 어린 염소를 거래 또는 출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어미소, 모돈, 어미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예방접종 확인서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확인서 휴대 확인) 구매자 등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 시장·군수는 이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소)				
농장 현황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육두수		두(암소 , 수소)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1세 미만 : , 1~2세 : , 2세이상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품종	성별	연령	개체 식별번호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예방접종일				
	*매매 출하두수가 5두이상인 경우, 추가로 별지 “세부 실시내역”에 기재하여 첨부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소의 것을 기재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 화 번 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 표시, 송아지의 경우 “연령”란에 개월령, 예방접종일은 이력제시스템에서 확인												

----- (간 인) ----- 절 ----- 취 ----- 선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소)				
농장 현황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육두수		두(암소 , 수소)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1세 미만 : , 1~2세 : , 2세이상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품종	성별	연령	개체식별번호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매매 출하두수가 5두이상인 경우, 추가로 붙임 “세부 실시내역”에 기재하여 첨부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소의 것을 기재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 화 번 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 표시, 송아지의 경우 “연령”란에 개월령, 예방접종일은 이력제시스템에서 확인												

[붙임 서식]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내역 (소)

품종	성별	연령	개체식별(귀표) 번호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계					

----- (간 인) ----- 절 ----- 취 ----- 선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내역 (소)

품종	성별	연령	개체식별(귀표) 번호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계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돼지)									
농장 현황	농장 고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모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출하두수			두 (자돈 : , 육성돈 : , 비육돈 : , 종모돈 등)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 하지 않은 자돈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모돈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자 돈																	
		육성돈																	
		비육돈																	
		종모돈																	
		기 타																	
계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 화 번 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 표시, 자돈의 경우 “일령”을 기재																			

----- (간 인) ----- 절 ----- 취 ----- 선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돼지)									
농장 현황	농장 고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모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출하두수			두 (자돈 : , 육성돈 : , 비육돈 : , 종모돈 등)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 하지 않은 자돈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모돈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자 돈																	
		육성돈																	
		비육돈																	
		종모돈																	
		기 타																	
계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 화 번 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 표시, 자돈의 경우 “일령”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염소)										
농장 현황	농장 고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암컷 , 수컷 , 어린 염소)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출하두수				두 (암컷 , 수컷 , 어린 염소)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린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 염소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암 컷															
					수 컷															
					어린염소															
					기 타															
계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 화 번 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어린 염소의 경우 “일령”을 기재																				

----- (간 인) ----- 절 ----- 취 ----- 선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염소)										
농장 현황	농장 고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암컷 , 수컷 , 어린 염소)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출하두수				두 (암컷 , 수컷 , 어린 염소)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린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 염소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암 컷															
					수 컷															
					어린염소															
					기 타															
계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 화 번 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어린 염소의 경우 “일령”을 기재																				